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 간의 식품, 의약품, 생약제제,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
(이하 "양측"이라 함)은,

두 나라간의 우호관계를 강화시키기를 희망하며.

식품, 의약품 (원료의약품, 백신, 생물의약품 포함), 생약제제, 화장품, 전강기능식품 (이하 "협력대상"이라 함)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

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을 참조하여,

양국의 법률 및 규정,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항

목적

동 MOU는 협력대상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

J. BW

제 2항 협력 분야

양측은:

- 가. 협력대상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서로의 관련 법률,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- 나. 협력대상에 관한 규정, 기준, 평가 및 검사 분야에서 협력한다.
- 다. 협력대상의 수입품이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시, 해당 제품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. 통보 시, 제공하는 제품정보에는 제품명, 발견된 문제점, 검사방법, 검사결과, 제조업자, 수출업자, 제조일자, 로트/배치 번호, 수출입 일자 등을 포함한다.
- 라. 수입된 제품에서 발견된 안전 및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, 수입국의 통보를 접수한 수출국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,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을 수입국에 통보한다. 필요한 경우 양측은 양측의 동의에 의해 국제우수관행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 공동현지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.
- 마. 양측의 가용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심포지움 개최 및/또는 공동훈련과정과 공동심사를 마련한다.

제 3항 시행

양측은 동 MOU를 체결함에 따라 2년간의 계획서를 마련한다. 계획서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, 재정 및 기타 필요한 시행 협정 등을 포함한다. 계획서 실행에 따른 관리 및 평가는 양측에 의해 주기적으로 시행된다.

R

JBW

제 4항
관계자의 제한

동 MOU와 관련된 각 측의 관계자는 동 MOU의 협력사항 이외에 상대측의 어떠한 정치적 및/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

제 5항
비용 부담

- 각 측은 동 MOU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되는 각 측의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- 일방측의 요청에 따라 상대측이 제공하는 협조의 비용은 요청한 측이 부담한다. 다만, 양측이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6항
정보 공개

동 MOU에 따라 진행되는 협력활동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("정보의 제공 측")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상대방이 허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 3자에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.

제 7항
이견 해결

동 MOU의 해석 및 이행에 있어서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측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R,

J, Bw

제 8항

수정 및 검토

동 MOU는 양측의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라도 검토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. 개정된 사항은 양측의 결정에 따라 개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동 MOU에 포함된다.

제 9항

유효기관과 종료

1. 동 MOU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다.
2. 동 MOU는 서명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. 이 MOU는 어느 한 측이 MOU를 한 향후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.
3. 동 MOU의 종료는 그 종료종료할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상대방 측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통보 시 동 MOU에 따라 진행중인 협력활동의 존속기간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다만, 양측이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 MOU는 2012년 7월 12일 자카르타에서 국문, 영문 및 인도네시아어 세 언어로 서명하였으며, 모든 문구는 동일하게 유효하다. 만일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영문본을 우선시 한다.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을
대표하여

H.S.-LEE

이희성

첨장

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을
대표하여

Rimlott

Dra. Lucky S. Slamet, MSc

첨장

J.BW